

# 인공신장실 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실무

법무법인 세승

현 두 료

**목차**

1. 행정처분의 유형
2.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3.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
4. 행정처분 절차
5. 대표적 사례

**1. 행정처분의 유형**

**1. 행정처분의 유형**

- ◆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의 행정처분
  -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 부담이득금 환수
  - 업무정지/과징금
  - 법 위반 사실 공표
- ◆ 기타 법률상의 행정처분
  - 마약류 관리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 2-1. 면허 정지
- 2-2. 면허 취소
- 2-3.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2-1. 면허 정지**

- 의료법 제68조(자격정지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단서, 검사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식재 <2011.8.4>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 면허정지 처분 사유**

- ◆ 품위를 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료법 시행령 32조)
  1. 직권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1월
  2. 비도덕적 진료행위: 1월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자격정지에서 제외(2012.8.7.)
  4. 과잉진료 및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경고/자격정지 1월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2월
  6. 다른 의료기관 이용하려는 환자를 자기 의료기관에 유인: 2월
  7. 약국과의 담합행위: 업무정지 2월
- ◆ 의료기관 불법 개설, 고용 등: 자격정지 3월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 개설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한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의료기관 중복개설

의료법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장은 의료인이 제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28]

### \* 면허정지처분 사유

-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진료기록부 관련**
  -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행 : 자격정지 2월
  - 거짓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발급 : 자격정지 3월
  -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발급 요청 거부 : 자격정지 1월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 자격정지 1월
    - \* 2012. 4. 부터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 진료기록부 미작성, 미보관 : 자격정지 1월
  -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 : 자격정지 15일
  - 진료기록부에 서명 누락 : 경고
- ◆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자격정지 3월 (업무정지 3개월 병과)
-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자격정지 15일

6

### \* 면허정지처분 사유

- ◆ **진료비 허위 청구**
  - ▶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2004. 3. 이후)** (단위 : 월)

활동근 거짓청구금액		거짓 청구 비율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2만원 미만	4만원 미만	-	-	1	2	3	4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	-	1	2	3	4	5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	2	3	4	5	6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	3	4	5	6	7
16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	4	5	6	7	8
7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5	6	7	8	9
2,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	6	7	8	9	10

7

### \* 불법 리베이트 수수한 경우

※ **의료법**

-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권을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권한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차량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의, 노동, 환용, 그 밖의 경제적 이익(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분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보통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건분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 \*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가능(2/3 범위 내)
-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위 특한 경제적 이익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8

※ **의료법 시행규칙**

-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 <신설 2010. 12. 1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건분품제공	건분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최소 수량의 의약품·의료기기
2. 학술대회지원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학술회의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숙비
3. 임상시험지원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및 연구비
4. 제품설명회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설비의 교통비, 숙박, 요양기관 직접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
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보통할인	요양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대금 결제시, 아래와 같은 비율할인 - 1개월 : 거래금액의 1.8%, 2개월 : 1.2%, 이하, 3개월 : 0.8% 이하
6. 시판 후 조사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 후 조사는 총래당 5만원 이하(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 사례비
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자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

9

### \*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상벌제 이전	(차등기준 없음)	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중 전 (10.11.28 생분제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적용)	1)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2)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3)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4)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5)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12개월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개정 (2013. 4. 1. 이후의 위반행위에 적용)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 수수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 수수액 300만원 미만	12개월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경고	12개월 12개월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3개월	12개월

### 2-2. 면허 취소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9.12.31>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선(改修)의 결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8조(면허취소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중신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지신자 인정신자
4. 이 법 또는 「합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보건법령」에 관한 특별조치법, 「.....」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12

**\* 면허취소 사유**

- ◆ 면허 취소 사유
  - 의료법 및 기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필요적 면허 취소)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증 대여
  - 결격 사유 발생
- ◆ 재교부금지기간
  -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받은 경우 : 2년
  - 면허증 대여 : 2년
  -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벌 확정 : 3년

13

**2-3. 업무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탈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만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3조 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제67조(대진료 처분)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와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4

**\* 업무정지처분**

- ◆ 처분 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관할 보건소)
- ◆ 대표적인 처분 사유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3월
  - 공무원의 직무 수탈을 방해하거나 조사 거부, 시정명령 위반 : 15일
  - 의료광고 규정 위반 ; 허위광고(2월), 과장광고(1월), 의료법상 금지 광고(1월),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15일, 3차 위반 : 1월)
  - 약사와의 담합행위 (1차 위반 : 1월, 2차 위반 : 3월, 3차 위반 : 허가 취소)
  - 사기죄(진료비 허위 청구)로 유죄 판결 받은 경우
- ◆ 과징금 대체 가능
  - 업무정지처분 대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대체는 3회까지만 가능 (진료비 허위 청구는 대체 불가)
  - 업무정지 1월 = 30일
  -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총수입금액 : 처분 전년도 의료업으로 발생한 총소득금액을 의미

15

**3.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

- 3-1. 본인부담금 환불 처분
- 3-2.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 3-3. 업무정지/과징금처분
- 3-4. 법 위반 사실 공표

**3-1.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7

**3-2.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유형

1. 요양급여기준 위반 청구(교의, 과실 불문)
2. 의료관계 법규 위반(예시)
  - 환자의 요청 중 무책임한 사유없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
  -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한 경우
  -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 행위
  - 병사서신 이외의 자가 병사서신 촬영을 보조한 경우
  -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사유가 아닌데도 낙태시술을 하고 원외처방전 발행한 경우
  -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3. 허위 청구

18

**3-3. 업무정지/과징금처분**

**제97조(보고의 검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 약제와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3-4. 법 위반 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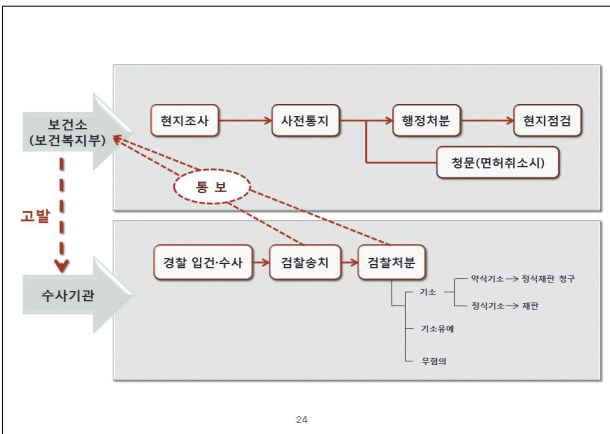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과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 건강보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내용**

근거	처분	내용
건강보험법	업무정지	• 1년 범위 내에서 월평균부담금액과 부담비율에 의하여 처분기간을 산출 •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 •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이면 총 부담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은 3배, 30일 초과 50일 중 4배, 50일 초과 하면 5배의 과징금 부과
	벌금	• 자료미제출, 현지조사 거부, 방해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별도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1천만원 이하 벌금
	명단 공표	• 공표대상: 허위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허위 청구 비율 20% 이상 • 공표내용: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의료법	면허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허위 청구한 때에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동 기간 동안 의료업도 할 수 없다.
	형법	• 허위 청구금액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 청구비율 10%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 • 현지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요양급여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임.

**4. 행정처분 절차**



**5. 대표적인 위반 사례**

- 5-1. 환자 유인
- 5-2. 불법 개설

5-1. 환자 유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위반 시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자격정지 2월

- 위반행위 유형
-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 금품 등 제공
-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 제공
-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 비급여대상 진료비 할인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을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환자 유인행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08. 2.28. 선고2007도10542 사건)

\*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메일 발송 사례

1. 공소사실의 요지

\*\*안과의원 원장인 피고인 \*\*과 피고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 공모하여 2008. 3.경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닷컴의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과 함께하는 라식/라섹 90만 원 제한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유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앞만 90만 원 OK, 유모하신 분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2회 발송하여 그 응모신청자 중 20명이 위 이벤트 광고내용대로 90만 원에 라식·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하였다.

2. 판결요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판결)

환자유인행위에 관한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요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권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치과의원 무료 스케일링 사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912

1. 치과의원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같은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받고, 1개월로 감경받은 사안)

2.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려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 1심 :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원고승소)

• 2심 : 문제의 광고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 등과 함께 해당 경쟁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사용됐다(원고패소)

5-2. 의료기관 불법 개설

◆ 불법개설의 유형

- 1.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
2.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하는 경우
3.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 등의 명의를 차용
4.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하거나 중복 개설하는 경우(2012. 8. 이후)
\* 의료법 제4조 제2항 :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 제8항 :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5-2. 의료기관 불법 개설

◆ 사무장병원 판별법

- 비의료인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 의료인은 고정 급여만 받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의 주체인 경우
- 의료인 이외에 비의료인이 경영에 관여하고 수익 배분을 받는 경우
- 법인 명의의 개설되어 있으나, 분사무소로 운영되면서 법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건물, 의료장비, 시설 등 일체를 비의료인이나 영리회사로부터 임차한 경우
- 진료비 감면, 브로커 운용 등 환자 유인을 많이 하는 경우
- 허위 과대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

5-2. 의료기관 불법 개설

◆ 불법개설에 관여한 의사의 책임과 불이익

-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및 3개월 면허정지처분  
(자수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2/3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 불법개설로 인한 진료비 청구는 건강보험법상의 '부당청구'에 해당  
→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과징금)처분
-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 기타 의료법 위반에 취약(무면허의료행위, 허위, 과대광고, 환자 유인 등)  
→ 이로 인한 모든 형사적, 행정적 책임은 일단 개설자인 의사에게 귀속
- 무자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도 곤란
- 병원 의료장비, 시설 등에 대한 권리 행사가 곤란
-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도 개설자인 의사의 책임

33

\* 관련 사례 - 비의료인에 고용된 의사 사례

- 갑(의사), 을(사무장, 사단법인 대표), 병(투자자)은 공동으로 병원 개설 약정.  
(갑 명의로 개설한 후, 나중에 사단법인 설립 후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자 변경하기로 합의)
- 갑 명의로 투석전문 의원 개설
- 을: 사단법인 설립 후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자 변경
- 환자 유인(교통 편의 제공, 환자에게 아침 식사 무료 제공, 브로커에게 환자 소개료 지급 등)
- 갑과 을 사이에 경영권 분쟁 발생
- 투석협회가 보건소에 민원 제기
- 보건소 :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 검찰 : 갑, 을, 병, 사단법인을 기소
- 2012년 부천지원 판결 ; 갑, 을, 병 모두 의료법(불법개설 및 환자 유인) 위반으로 처벌.

\* 의료생협을 통한 불법개설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9.13.선고 2013고단479)

·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나중에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개설자를 변경한 사례.

- ① 개인병원으로 운영되던 것을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처럼 외형만 변경되었을 뿐, 진료원장과 직원 등 인적 구성이나 운영방식이 차이가 없는 점,
- ② 조합원 대부분이 이전 병원 직원이나 피고인들의 지인을 위주로 구성된 점,
- ③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총회에 출석한 것처럼 명부나 회의의사록이 허위로 기재된 점,
- ④ 조합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이 피고인 A(비의료인)의 개인자금에서 지급된 점,
- ⑤ 병원경영권이 개인에서 조합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그 양도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 관계없이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 할 목적을 위 병원들을 개설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